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00
----------	-----

2015년 6월 26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5월 26일, 이윤희 의원 외 21명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5년 6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윤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급수여건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급수범위 규정을 보완·개선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가압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며,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급수여건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

할 수 있도록 급수범위 규정을 보완·개선함

- 현행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급수범위를 준용하여 시의회의 의결 규정 삭제(안 제2조제1항)
- 공급실정과 맞지 않고 불필요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 유희 용량 활용을 위해 공업용수도 이외의 목적으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의회의 의결 규정 삭제(안 제2조제4항)
- 법률에 근거 없이 사용자 등에게 운영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현 공급실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해당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별표 1,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조(급수구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가. 개요

-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급수여건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준용하여 급수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가압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공업용수도 현황

- 서울시 공업용수는 1969년 7월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내에 공업용 수원지를 건설하여 공급해 오고 있으나 산업시설의 이전 및 변동으로 초기 120개 업체였던 공업용수 공급대상이 2015년 현재 3개 업체로 급감함에 따라 유희용량 활용 및 급수수익 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수요처의 발굴이 필요한 실정에 있음.

1973년 120개	⇒	1995년 23개	⇒	2007년 4개	⇒	2012년 ~ 3개
---------------	---	--------------	---	-------------	---	---------------

<공업용수 공급대상 업체 현황>

2) 급수범위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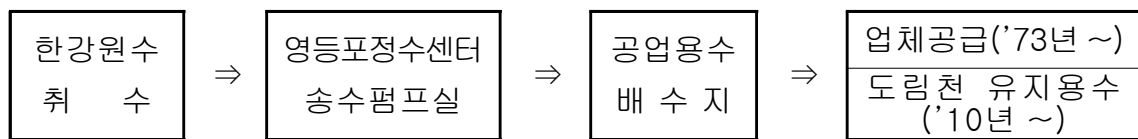
- 현행 공업용수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고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 공익상 급수(제1항)하거나 관할구역 내의 구역에 천재지변 등에 따른 비상급수(제2항) 및 비영리법인이 관리하는 특정지역에 급수

(제4항)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조의 수돗물 급수구역(범위)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 규정은 급수여건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공급자 위주의 규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공익 및 비상급수 취지에 맞게 행정규제 절차를 단순화하는 취지에서 삭제('09.9.30 개정)한 바 있으며, 부산시 등 타 광역시 관련 조례에서도 급수구역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앞서 개정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와 동일한 취지로 공업용수의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 공익상 급수, 천재지변 등에 따른 비상급수에 대해서도 시의회 의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공업용수 공급대상 업체 수가 급감함에 따라 유희용량 활용 목적으로 서울시가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와의 협약¹⁾을 통하여 2010년 6월 1일부터 도림천에 유지용수(계약 용량 3만톤/일)를 공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상수도 세입 증대²⁾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공업용수 공급계통>

안 제2조제4항과 같이 하천 유지용수 등 공업용수도 이외의 공익적 급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행정규제 절차 단순화 차원에서 시의회

1) 유지용수 사용료는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가 각각 30%, 동작구가 10% 비율로 분담하고 있음

2) 롯데제과 등 3개 업체 공업용수 공급 수입('14년 기준) : 63백만원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 수입('14년 기준) : 3억 71백만원

의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3) “가압료 징수 규정” 삭제(안 제8조)

- 현행 조례 제8조에서는 “특수 가압시설을 운영할 경우 공업용수 사용자 등으로부터 운영 설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 근거 없이 사용자 등에게 운영 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특수 가압시설을 운영하여 공급하는 사용자 또한 없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용어 정비 등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을 준용하여 “손료”를 “구경별기본요금”,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실비”를 “실제비용”, “산정방식”을 “계산방식”으로 하는 등 일부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관계 법령

「수도법」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①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에게 기간·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도지사이면 환경부장관이 명한다.

제48조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업용수도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8조의 규정에”를 “제48조에”로 하며, “공업용 수도에”를 “공업용수도에”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④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관리하는 특정지역에 공업용수도 이외의 목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이나 급수설비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중 “받고자 하는 사람은”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하고 한다.

제5조제3항 중 “실비”를 “실제비용”으로 한다.

제6조 규정명 중 “사용료”를 “사용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업용수의 사용료의 요금은”을 “공업용수 사용요금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을”을 “물가상

승률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의 산정방식은”을 “사용요금 계산방식은”으로 하고 “사용료”를 “사용요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물가상승률은”을 “물가상승률은”으로 한다.

제7조 규정명 중 “손료”를 “구경별기본요금”으로 하며, 제7조 중 “손료를”을 “구경별기본요금을”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중 “규정에 의한다”를 “규정을 따른다”로 한다.

제11조 중 “규정에 의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구 분	원인자부담금(원/세제곱미터)
당 초 수 요 처	13,000
신 규 수 요 처	17,000

당초수요처 : 공업용 수도공사의 발족 당시 투자한 사업체(공장이전은 포함되지 않음)을 말한다.
 신규수요처 : 공업용 수도공사의 발족 이후 신규수요처를 말한다.

[별표 3]

급수관 구경별기본요금

구경(밀리미터)	요금(원/전·개월)	구경(밀리미터)	요금(원/전·개월)
13	150	150	4,000
20	300	200	5,600
25	400	250	6,900
40	600	300	8,200
50	1,200	400	11,200
75	2,400	500	15,300
100	2,8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u>	<u>서울특별시 공업용수도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u>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용 수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특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급수의 범위) ① <u>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밖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u></p> <p>② <u>천재지변 그 밖의 비상시 긴급히 급수를 한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시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③ (생략)</p> <p>④ <u>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 관리하는 특정지역에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설이나 급수설비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u></p> <p>제4조(원인자부담금) <u>공업용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제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u></p> <p>제5조(계량기의 고장)</p> <p>① ~ ② (생략)</p>	<p>제1조(목적) ----- <u>제48조에 ----- 공업용수도에 -----</u></p> <p>-----.</p> <p>제2조(급수의 범위) ① <u>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u></p> <p><삭 제></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 관리하는 특정지역에 공업용수도 이외의 목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이나 급수설비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u></p> <p>제4조(원인자부담금) ----- <u>받으려는 자는 -----</u></p> <p>-----.</p> <p>제5조(계량기의 고장)</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③ 제1항의 검정 수수료, 수리비용 및 계량기 대금은 수요가 등으로부터 실비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

제6조(공업용수 사용료) ① 공업용수의 사용료의 요금은 시장이 전년도 공업용수 생산원가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② 공업용수 사용료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사용료} = \text{사용량} (m^3) \times \text{전년도 생산원가} \times (1 + \text{물가상승률})$$

③ 물가상승률은 최근 5년간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 평균 수치에 근거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7조(급수관 손료) 공업용수 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급수관(계량기 제외) 손료를 징수한다.

제8조(가압료 징수) ① 시장이 특수 가압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공업용수 사용자 등으로부터 운영 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 설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에 의한다.

③ -----
----- 실제비용
-----.

제6조(공업용수 사용요금) ① 공업용수 사용요금은 -----
----- 물가상승률을 -----
-----.

② ----- 사용요금 계산방식은 -----
-----.

$$\text{사용요금} = \text{사용량} (m^3) \times \text{전년도 생산원가} \times (1 + \text{물가상승률})$$

③ 물가상승률은 -----

-----.

제7조(급수관 구경별기본요금) -----

----- 구경별기본요금을 -----.

<삭 제>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

-----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
-----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시설분담금

구분 \ 시설분담금	신청수량	시설분담금
당 초 수 요 처	1 m ³ 당	13,000
신 규 수 요 처	1 m ³ 당	17,000

당초수요처 : 공업용 수도공사의 발족 당시 투자한 사업체(공장 이전은 포함되지 않음)을 말한다.
 신규수요처 : 공업용 수도공사의 발족 이후 신규수요처를 말한다.

[별표 3]

급수관손료

구경별	요금	구경별	요금
13 m/m	1전1개월 150원	150m/m	1전1개월 4,000원
20 ′	300원	200 ′	5,600원
25 ′	400원	250 ′	6,900원
40 ′	600원	300 ′	8,200원
50 ′	1,200원	400 ′	11,200원
75 ′	2,400원	500 ′	15,300원
100 ′	2,800원		

[별표 1]

원인자부담금

구 분	원인자부담금(원/세제곱미터)
당 초 수 요 처	13,000
신 규 수 요 처	17,000

당초수요처 : 공업용 수도공사의 발족 당시 투자한 사업체(공장 이전은 포함되지 않음)을 말한다.
 신규수요처 : 공업용 수도공사의 발족 이후 신규수요처를 말한다.

[별표 3]

급수관 구경별기본요금

구경 (밀리미터)	요금 (원/전·개월)	구경 (밀리미터)	요금 (원/전·개월)
13	150	150	4,000
20	300	200	5,600
25	400	250	6,900
40	600	300	8,200
50	1,200	400	11,200
75	2,400	500	15,300
100	2,800		